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0/08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4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본문과 단서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각각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조 제5항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2호·제5

호·제12호”로 하며, 같은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을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며, 같은조 제4항과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고, “시행규칙”을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내용 등”으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으로 하며, “1월말”을 “2월말”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30일”을 “1개월”로, “별지 제1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으로,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을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으로, 같은호 라목의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을 “내용을”으로 하며, 같은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제1호 중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4와 같다”를 “영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 제4항에 따라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 이유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1) 다량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일괄 제외 규정을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거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면적기준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으로 개선 (제2조제3호)
- (2)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 (제5조제2항)
-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 관련 규정 정비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서식 삭제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나.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 삭제

(제8조제6항, 안 제16조, 안 제17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조문 원용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제19조, 별표4)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